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1 선고 2021가합53424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소]

전 문

원 고 1. 사단법인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

담당변호사 박찬중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3. 4.

판 결 선 고 2022. 4. 1.

주 문

1. 피고는 망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
가. 원고 사단법인 A에게 2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9. 8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,
나. 원고 B에게 65,510,573원 및 이에 대한 2022. 2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,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의 망 D에 대한 지급명령상 채권

- 1) E은 1992. 11.경부터 1993. 3.경까지 망 D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에게 합계 235,000,000원을 빌려 주었다.
- 2) E은 수원지방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2009. 7. 15. 235,000,000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(이하 ‘이 사건 지급명령’이라 한다)을 받았다(2009차5870호).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. 8. 4. 망인에게 송달되었고, 2009. 8. 19.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 B의 망인에 대한 판결금 채권

- 1) 원고 B은 2007. 9. 6. 망인으로부터, 액면금 200,000,000원의 약속어음 1장(이하 ‘이 사건 약속어음’이라 한다)을 발행받고,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.
- 2) 망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(2010가합2773호). 위 패소 판결에 대하여 망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, 2011. 6. 17.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5,510,57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(이하 ‘이 사건 판결’이라 한다)을 선고받았고(2010나81522호), 위 판결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(2011다60148호).

다.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한정승인

망인은 2014. 8. 28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피고와 F이 있었는데,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5. 1. 14.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(2014느단2184호), F은 같은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2015. 1. 14.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(2014느단2196호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, 6, 14호증(가지번호를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1) 원고 사단법인 A(이하 '원고 A'라고 한다)는 2017. 6.경 E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,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채무를 한정승인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원고 B은 망인에 대한 65,510,573원 상당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 B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1)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G1)와 짜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진행한 소송사기이자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2)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. 설령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,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으므로,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3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, 갑 제2, 3, 12,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소제기가 소송사기이거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

1) E이 2009. 7. 15.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,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2015. 1. 14. 망인의 채무를 한정승인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2)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 A는 2017. 6.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[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G의 주도하에 채권양도계약서(갑 제2호증)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일 뿐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① 위 채권양도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②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E은 원고들이 위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며 원고 A의 대표자인 H 등을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및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] 및 E이 2017. 6. 26.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(갑 제3호증)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.

3)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서증의 현출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60. 12. 15.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참조).

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방법으로 현출되었고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

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)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A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. 8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

1) 원고 B은 망인에 대하여 65,510,573원 상당의 이 사건 판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고,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2015. 2. 14. 망인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2)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,510,573원 상당의 이 사건 판결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2. 2. 14.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. 2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허명산, 판사 정신영, 판사 한광수

1) 원고들은 당초 G를 피고 3.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. 11. 2.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.